

인플레이션의 原因에 관한 理論的 對立 *

朴 在 潤

<目 次>

- I. 戰後 인플레이션의 現狀的 特徵
- II. Demand-pull 과 Cost-push
- III. 通貨論者와 構造論者

I. 戰後 인플레이션의 現狀的 特徵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經濟的 用語는 美國의 南北戰爭當時 戰費調達의 方法으로 그린백(green-back)이라는 不換紙幣가 濫發되어 實際의 通貨가 社會의 通貨需要와는 無關하게 膨脹하게 되었던 狀態를 指稱하여 使用되기 시작한 以來⁽¹⁾ 一般的인 價格水準의 上昇 내지 貨幣價值의 下落現象을 總稱하는 表現으로서 널리 利用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라는 經濟的 現象을 단순히 一般的인 價格水準의 上昇 내지 貨幣價值의 下落으로 規定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理論的으로 매우 重要한 몇 가지 問題點이 看過되고 있다.⁽²⁾

1. 無數히 可能한 여러가지 價格水準 중에서 어떤 것을 基準으로 하여 價格水準의 下落을 規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오늘날에는 內在的인 國民所得 디플레이터(deflator) 가 혼히 利用되고 있지만, 1939年 以前에는 이러한 디플레이터가 대체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로 都賣價格指數가 利用되었었다. 그러나 價格水準의 基準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價格水準의 變化에는 커다란 差異가 있는 것이 事實이며, 이러한 差異는 하나의 政策的인 論爭點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都賣價格指數의 安定時期는 消費者價格指

* 이 노트는 1950年代 後半期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原因에 관하여 美國을 中心으로 일어난 Demand-pull 理論과 Cost-Push 理論의 對立 및 그 發展,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를 舞臺로 展開된 通貨論者와 構造論者간의 理論的 政策的 對立를 理解하려는 素朴한 目的을 가진다. 그러나 그에 앞서 戰後 世界各國에 거의普遍적인 現象으로 되다시피 한 인플레이션의 現狀의 特徵을 먼저 考察하는 順序를 취하고 있다.

(1) 博英社『經濟學辭典』p. 1143.

(2) M. Bronfenbrenner and F.D. Holzman, "A Survey of Inflation Theory," in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d the Royal Economic Society, *Surveys of Economic Theory*, Vol. I, pp. 50—51.

(3) 經濟科學審議會議譯, 『1962年 美國大統領 經濟報告書』, p. 158.

數와 GNP 디플레이터의 緩慢한 上昇時期로 되는 傾向이 一般的으로 있는 것이다.⁽³⁾

2. 새로운 生產品, 品質의 變化, 消費慣習의 變化 등과 같은 要因을 어떻게勘案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예컨대 美國에 있어서 AFL-CIO는 第2次世界大戰 중에 公式的인 價格指數가 戰時인플레이션의 強度를 過少評價하고 있다는 點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要因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1950年代 後半에 있어서 G. Stigler는 政府의 公式的인 價格指數가 韓國戰爭으로 인한 美國의 인플레이션의 強度를 過大評價하고 있다는 點을 위와 같은 理由에서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3. 價格統制가 實施되고 있는 경우에는 公定價格을 基準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暗市場價格을 基準으로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비록 組織的인 暗市場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價格統制下에서 財貨를 求得하기가 보다 어려워진 事情은 어떻게勘案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또한 提起되는 것이다.

4. 商品에 대한 課稅 혹은 補助金支給이 行하여 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租稅나 補助金을 包含한 價格을 基準으로 할 것인가, 혹은 그것을 除外한 價格을 基準으로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5. 戰爭, 洪水, 혹은 地震 등으로 인하여 財貨의 總供給이 크게 下落하였을 경우 財貨에 대한 總需要의 增加는 전혀 없이 결파된 價格水準의 上昇도 역시 인플레이션이라고 規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6. 價格水準의 上昇이 적어도 短期的으로는 實質生產과 雇傭을 增加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規定할 것인가, 혹은 生產과 고용의 대단한 增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만을 인플레이션이라고 規定할 것이가 하는 問題가 있다.

7. 技術進歩가 生產費를 크게 節減시켰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상당하는 價格의 下落이 없을 경우 여기서 結果되는 貨幣賃金과 總利潤의 增加를 인플레이션이라고 規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8. 價格上昇이 正確하게 豫期되었다든가 혹은 不正確하게 豫期되었거나 전혀 豫期되지 않았거나 하는 點이 인플레이션을 規定함에 있어서 어떠한 差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가 있다.

9. 價格水準의 變化가 永續의이고 不可逆의인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點이 인플레이션의 定義에 어떠한 差異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以上에서 장황하게 引用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의 定義를 단순히 一般的인 價格水準의 上昇 내지 貨幣價值의 低落에만 구하는 것에는 대단히 重要한 多數의 問題點이 介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點 때문에 여러 學者들은 인플레이션을, 過多한 貨幣가 過少한 財貨를 追跡하는 一般化된 超過需要의 狀態로 定義하거나, 總體的으로 表示되거나 혹은 1人當으로 表示된 貨幣스토크 혹은 貨幣所得의 增加現象으로 定義하기도 하며, 不完全한 期待, 繼續的인 上昇, 雇傭과 實質生產의 不增加, 安全水準以上의 增加速度, 貨幣供給側面으로부터의 發生, 間接稅와 補助金을 差減한 價格水準의 上昇, 不可逆性 등등을 그 特徵으로 하거나 條件으로 하는 價格水準의 上昇이라고 規定하기도 하며, 外換率이나 金價에 의하여 測定된, 혹은 金이나 外換에 대한 超過需要가 나타내주는 貨幣의 對外價值의 低落으로써 인플레이션을 定義하기도 하였다.⁽⁴⁾ 뿐만 아니라 보다 包括的인 定義로는 “總實質所得, 總實質支出 및 總實質生產을 實物的으로 不可能한 水準으로 維持하거나 혹은 이들을 實物的으로 不可能한 水準에 까지 提高할 것을 試圖하는 競爭에서 結果되는 過程”⁽⁵⁾이라고 인플레이션을 定義하는 學者도 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定義는 觀點에 따라 多樣하게 行하여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經濟的 現象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現狀的 屬性을 가지는 것으로 料된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一時點에 있어서의 靜態的인 狀態가 아니고 多少 長期에 걸쳐서만 考察될 수 있는 動態的인 過程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運動으로서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財貨나 貨幣에 관한 現象이 아니고 價格에 관한 現象이며, 價格의 上昇이 인플레이션의 本質的인 現象인 것이다. 貨幣의 追加的인 供給이나 財貨의 供給減少가 價格上昇에 原因的인 役割을遂行할련지는 모르나 그것 自體가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이다.

세째, 인플레이션時期에 있어서의 價格의 運動은 特定한 價格의 上昇이 經濟全般을 통하여 波及되고 그것이 所得을 創出함으로써 다시 더 이상의 價格上昇을 일으킨다. 인플레이션時期에 있어서의 이러한 價格上昇은 때때로 斷續되거나 緩和되기도 하므로 「繼續的」(continuous)이라거나 「自己加速的」(self-accelerating)이라고 表現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自己永續的」(self-perpetuating)인 움직임이라고는 할 수 있다.⁽⁶⁾

네째, 인플레이션에 있어서의 價格上昇은 偶然한 財貨不足이나 週期的인 運動의 結果로 特定市場에 있어서 一時的으로 發生하는 價格上昇과는 區別되는 不可逆的(irreversible)

(4) M. Bronfenbrenner and F.D. Holzman, *op. cit.*, pp. 51—52.

(5) Ralph Turvey의 定義

(6) Émile James, "A General Survey of Post-war Inflation", in *Inflation*, ed. by D.C. Hague, p. 3,

인 上昇作用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現狀的으로 본 인플레이션의 基本的 特徵을 勘案할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는 것이 温當하다고 본다. 즉 「인플레이션은 價格의 自己永續의이며 不可逆의인 上向運動」인 것이다.⁽⁷⁾

이와 같이 價格의 自己永續의이며 不可逆의인 上向運動으로 定義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現象은 第2次 世界大戰以後 先進工業國이나 低開發國, 그리고 심지어는 計劃經濟의 國家에 있어서까지도 實際의인 인플레이션(actual inflation)이 아니면 인플레이션壓力(inflationary pressure)으로 나타났었다.

先進工業國의 경우에는 비록 계속적이고 급속한 價格上昇은 없었지만 상당한 정도의 價格上昇이 대부분의 國家에 있어서 容認되고 있는 實情이며, 더구나 外換市場에 있어서 硬直의인 通貨를 가지고 있는 國家도 역시 이같은 價格上昇의 趨勢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低開發國은 貨幣價值의 低落率이 1945年以後에 있어서 大戰中の 期間에 있어서보다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一種의 痛疾의인 인플레이션에 例外없이 直面해 왔다는 것은 周知된 事實이다.

그리고 計劃經濟의 경우에는 原理上 總供給과 總需要간의 不均衡이 있을 수 없고 쏘련과 같은 國家는 終戰以來 인플레이션을 전혀 避지 않고 오히려 價格을 여러차례 下落시킬 수 있었다고 主張하지만, Émile James에 의하면 計劃經濟體制를 취하고 있는 쏘련에 있어서도 貨幣의in 壓力의 徵候를 發見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壓力은 第1次 5個年計劃期間중에 發生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貨幣의 壓力의 結果 終戰直後부터 1947年에 이르는 동안 需給간의 심한 不均衡은 公定價格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特定財貨의 餉饉(shortages), 配給(rationing), 暗市場(black market)의 繁盛, 二重價格(dual prices)의 形成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947年以後에는 쏘련經濟가 實際의 인플레이션을 당하지 않은 것은 事實이지만, 모든 인플레이션壓力이 除去된 것은 아닌 것이다.⁽⁸⁾

이와 같이 國家에 따라 그 樣相이 相異하기는 하지만 1945年以來 거의 모든 經濟가 인플레이션壓力을 받아왔으며 대부분의 國家에 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壓力은 특히 終戰直後의 一般的의 缺乏時期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急速한 經濟的 擴張을 達成하려

(7) *Ibid.*, p. 3. 여기서 Émile James는 “供給能力에 비한 需要의 超過에 起因하는” 이라는 인프레이션의 原因까지 紛明하는 定義를 내리고 있지만 인프레이션을 定義함에 있어서 그 原因을 超過需要에만 局限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고 본다.

(8) *Ibid.*, p.9.

고 하였을 때 實際的인 인플레이션으로 發展하였다.

그러나 戰後의 인플레이션은 一般的으로 1939年以前의 時期와 比較하여 다음과 같은 약간의 새로운 現狀的인 特徵을 示顯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戰後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抑壓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⁹⁾이었다. 第2次大戰後 自由企業經濟에 있어서도 政府가 價格上昇을 緩和하거나 價格上昇의 一般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國民經濟의 運動에 介入하는 것이 當然視됨으로써 때로는 價格全般에 대한 統制가 行하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特定市場에 대하여 價格統制가 實施되기도 하였으며, 法律이나 命令에 의한 直接的인 價格統制가 非效果의 이었기 때문에 賃金補助와 같은 餘他의 間接的인 方法에 의하여 價格安定을 達成하려는 努力이 傾注되기도 하였다. 價格上昇의 抑制를 위한 이같은 政策的 努力에도 不拘하고 價格上昇이 除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政策的 努力下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은 그러한 價格統制가 全無한 경우의 ‘開放’인플레이션(‘open’ inflation)⁽¹⁰⁾과는 전혀 다른 樣相으로 展開된 것이다.

全般的인 價格統制를 行하는 경우에는 配給制度의 實施가 不可避하였으며 이러한 政策의 效果를 發揮하는 정도에 따라 可處分所得(貨幣所得)의 一部가 支出되지 않고 남게 되었고 이러한 殘餘의 所得은 購買力化하지 못하도록 效果의으로 吸收되어야만 하였다. 理論的으로는 可能한 購買力의 吸收가 實제로는 效果의으로 이루지지 못하였으며, 暗市場이 繁盛하고 드디어는 公定價格線의 瓦解가 一般化되었다.

이와는 달리 特定市場에 대한 價格統制가 行하여진 경우에는 價格統制가 行해지는 市場에서 支出되었을 貨幣所得의 價格上昇이 禁止되지 않은 다른 市場으로 移動함으로써 兩市場간의 價格隔差를 擴大시키고 終局에는 特定市場에의 價格統制를 不可能하게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全般的이든 特定의이든 價格統制는 超過需要를 除去할 수는 없고 단지 一時的으로 그 可視的인 徵表를 糊塗할 뿐이었으며 早晚間에 價格은 上昇하고 따라서 價格統制가 인플레이션을 防止하지는 못하고 다만 인플레이션을 斷續的인 것으로 만들 뿐이었다.

둘째, 1945年以來 인플레이션은 異質的(heterogeneous)⁽¹¹⁾인 것이었다. 從前의 모든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도 各部門의 需給彈力性和 價格伸縮性的 差異때문에 價格運動이 어느 정도 平行性을 缺如하고 있었던 것은 事實이었으나, 1945年以來 인플레이션經濟에 있어

(9) Bent Hansen, *The Theory of Inflation*, p. 3.

(10) *Ibid.* p. 9.

(11) Émile James, *op. cit.*, p. 11.

서 各種市場의 價格運動의 差異는 매우 顯著하였다.

이는 前述한 바의 部分的인 價格統制政策에 그 原因의 一部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價格運動의 差異는 所得의 分配를 明白히 修正하고 資源의 配分을 歪曲시키는 等의 中요한 結果를 招來하였지만, 그것은 또한 인플레이션을 永續的인 것으로 만드는 效果를 發揮하였다. 즉 인플레이션의 進行이 異質的인 경우에는 價格과 貨金의 上昇이 빠른 部門에로 資源이 移動하므로 그것이 느린 部門의 餓饉現象은 더욱 加重되고 특히 인플레이션壓力의 一般的인 原因이 사라진 뒤에도 價格上昇이 지체되었던 部門에서는 뒤늦게 價格上昇이 일어나므로 흔히 인플레이션이 再發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세째, 戰後 인플레이션의 進行에 관하여는 흔히 크리핑인플레이션(creeping inflation)이라는 表現이 使用되고 있다. 이는 1945年以來의 인플레이션은 그 進行이 緩慢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持久的(resistant)이라는 點을 表現하는 것이다. 그것은 以前의 갤러핑 인플레이션(galloping inflation)과 反對되는 概念으로서 UN의 *World Economic Survey, 1957*에 의하면 “戰爭이라든가 또는 戰後의 調整過程과 같은 非正常的인 努力에 의하여 發生되는 것이 아니고 經濟成長의 正常的인 勢力와 結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핑 인플레이션은 그 進行이 아무리 緩慢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安定에 대한 永久的인 危脅으로 나타났으며, 藉機를 얻어 갤러핑인플레이션으로 發展하지 않도록 斷乎히 回避되어야 하는 性質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크리핑인플레이션일 때에는 디프레이션으로 急激히 變轉할 可能성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特別히 危險스러운 것이라고 指摘되고 있다.⁽¹²⁾

그러나 Émile James 와 같은 學者는 戰後의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을 크리핑인플레이션으로 表現하는 데에 약간의 異論을 提起한다. 즉 몇몇 國家 특히 低開發國은 戰後에 갤러핑인플레이션을 겪어 왔으며, 특히 先進國의 경우에는 價格의 상승이 모든 國家에 있어서 中斷됨이 없이 進展된 것이 아니고 價格運動이 오히려 不規則的이고 斷續的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戰後 인플레이션의 進行 類型은 ‘크리핑’이라기보다 ‘段階的’(stepwise)이라고 表現하는 것이 보다 正確한 表現”⁽¹³⁾일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段階的인 進行은 앞서 말한 바의 抑制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있어서 特徵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略述한 바와 같이 戰後의 인플레이션은 抑制된(repressed) 인플레이션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異質的(heterogeneous)이고 段階的(stepwise)인 發展을 보였다는 것이 現狀

(12) *Ibid.*, p. 15.

(13) *Ibid.*, p. 18.

的으로 把握한 戰後 인플레이션의 特徵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現狀的 特徵을 가지고 展開된 戰後의 인플레이션에 관하여는 그 原因을 說明함에 있어서 새로운 인플레이션理論의 發展을 보았다. 戰後에 世界的으로 展開된 인플레이션의 現狀的 特徵을 把握함과 아울러 그 原因의 說明을 圍繞하여 展開된 인플레이션理論의 發展을 考察하는 것이 이 노트의 目的이다.

II. Demand-pull 과 Cost-push

戰後의 緩慢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學者에 따라 여러가지 相異한 見解의 差異가 나타났으며 특히 그 原因에 관하여 對立의인 論爭이 展開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對策에 관하여도 相反되는 主張이 펼쳐졌다.

一群의 論者는 總需要가 總供給보다 더 빨리 增加하기 때문에 價格과 賃金이 牽引(pull up)된다고 主張하고 다른 一群의 論者는 勞動組合에 의한 賃金引上의 要求나 獨占企業에 의한 價格의 管理로 말미암은 費用의 上昇이 價格水準을 騰貴(push up)시킨다는 主張을 폈다고 있다. 前者は一般的으로 超過需要인플레이션論(demand-pull inflation theory)이라고 總稱되며 이에 대하여 後者は 費用上昇인플레이션論(cost-push inflation theory)라고 指稱되고 있다.

貨幣數量說을 前提로 한 古典的 인플레이션理論에 있어서는 價格水準의 變化를 通貨量의 變化에 歸結시켰었다. 1930年代初期의 大恐慌 以前에 公認된 經濟理論은 貨幣所得水準과 價格水準의 決定因子로서 貨幣量(stock of money)에 커다란 重要性을 賦與하였다. 그러나 大恐慌은 이러한 思考方式에 하나의 革命을 가져왔다. 즉 通貨政策이 恐慌을 沼止하는에 失敗한 事實은 通貨政策이 그러한 效果를 가질 수 없다는 證據로 認識되게 되었다. 貨幣가 問題되는 것이 아니라, 貨幣量은 經濟變化의 純粹히 受動的인 附隨因子에 지나지 않고 制限된 範圍의 市場利子率에 영향을 미치는 以外의 어떠한 獨立的인 役割도 遂行하지 못한다는 見解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¹⁴⁾

여기에 Keynes의 戰費調達論(*How to Pay for the War*)에 따라 價格水準의 主要한 決定因子로서 國民支出水準을 강조하는 새로운 理論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Keynes의 인플레이션理論은 貨幣스톡(stock)보다 所得 및 支出프로(flow)를 더 強調한다.

戰後의 需要側面을 강조하는 인플레이션理論은 주로 Keynes의 所得一支出理論을 修正發展시키는 方向으로 展開되었지만 H.G. Johnson이나 Milton Friedman과 같은 少數의 學者

(14) M. Bronfenbrenner and F.D. Holzman, *op. cit.*, p. 54.

들은 貨幣스專論을 發展시켰다. 즉 Friedman에 의하면, 戰後에 있어서 많은 國家들이 “通貨緩和”(cheap-money)政策을 追求함으로써, 그러한 國家는 모두 開放인플레이션을 經驗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壓力을 抑制하기 위하여 考案된 一聯의 統制를 實施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貨幣스특은 金融緩和政策의 결과로 增大하였고 價格이 開放的으로 上昇하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僞裝된 경우에 있어서도 諸般統制를 妨害하는데 매우 效果의이었다는 것이다. 즉 그에 의하면, 어떠한 國家도 貨幣스특의 증가를 制限하는 方向으로 指向된 諸方案을 採擇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防止한 국가는 없으며, 貨幣스특의 成長을 制止한 모든 국가는 價格上昇을 抑制하는데 成功하였다는 것이다.⁽¹⁵⁾

所得支出側面에 있어서는 1940 年代에 처음으로 Keynes의 理論을 動態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한 一團의 分析이 나타났다. 이 理論은 完全雇傭水準과 그뒤에 오는 價格水準에 있어서 總體的인 支出曲線($C+I+G$)의 行態를 調査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所要의 實質支出(desired real expenditures)와 實質產出의 固定水準간의 差이 實質殘高效果, 貨幣錯覺, 累進課稅, 時差 등으로부터 消費者와 企業 및 政府가 받는 영향의 결과로서 擴大되는가, 혹은 縮小되는가 하는 것이 이 理論의 關心事인 것이다. 上昇하는 價格이 이 세 部門의 實質需要를 削減함으로써 產出以上으로 加重되지 않도록 할 때에만 安定의 結果的으로 達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理論은 주로 인플레이션過程의 速度와 安定性의 決定因子를 把握하기 위하여 案出된 것이었다.⁽¹⁶⁾

이와 같이 Keynes 類의 理論은 대체로 財貨市場에 있어서의 超過需要에만 分析을 局限하고 있음에 反하여, B. Hansen은 生產用役(要素)市場을 財貨市場으로부터 分離하여 考察함으로써 需要인플레이션理論에 하나의 重要한 改革을 가져왔다. Hansen에 의하면 財貨에 대한 超過需要, 즉 “財貨差”은 주로 勞動要素에 관련되는 “要素差”(factor gap)과 分離하여 測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完全한 인플레이션을 위하여는 각각 正의 超過需要를 갖는 財貨差과 要素差이 함께 存在하여야 하며 만약 正의 財貨差이 負의 要素差과 結合되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不均衡의 結果 즉 生產用役에 대한 과도한 價格을 意味한다는 것이 그의 說明이다. Hansen은 이와같은 理論에 의하여 抑壓된 인플레이션, 構造的 失業, 失業—인플레이션 등을 說明한 것이다.⁽¹⁷⁾

위의 두가지 理論과 마찬가지로 超過需要에 의하여 인플레이션의 發端을 說明하면서도

(15) *Ibid.*, pp. 54—5.

(16) *Ibid.* p. 56.

(17) B. Hansen, *op. cit.*

인플레이션의 說明을 약간 달리 하는 立場이 있다. 즉 前者の 超過需要인플레이션論은 完全雇傭에 있어서의 供給函數가 水平的인 것을 前提로 한 것이나, Patinkin을 嘴矢로 하여 Martin Bronfenbrenner 등은 完全雇傭에 있어서라도 價格水準變化에 대한 自發的 失業, 私的 投資, 產業的 충돌(industrial conflicts), 外換의 稼得性等의 反作用에 따라 能力函數가 正 혹은 負의 彈力性을 가진다는 것을勘察하여 非水平的인 能力函數를 導入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說明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完全雇傭水準에 있어서의 總支出의 正常總供給(45度線)에 대한 超過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고 總供給能力曲線自體가 非水平의므로 總支出水準의 높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正常供給曲線에 대한 超過需要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⁸⁾

인플레이션을 總供給에 대한 總支出需要의 超過에 의하여 說明하든, 혹은 그것을 財貨市場과 要素市場의 경우로 區分하여 說明하든, 그리고 非水平의 供給能力函數를 導入하여 說明하든 이들은 모두 超過需要가 인플레이션의 原因이 된다는 觀點에 서 있다.

이들 超過需要論者들은 價格과 賃金이 財貨나 生產要素에 대한 需要供給의 競爭的 市場勢力에 의하여 決定되며 적당한 정도의 上向 및 下向의 伸縮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超過需要論者들이 認定하는 바와 같은 價格과 賃金의 伸縮性은 最近에 이르러 많은 理論家들에 의하여 否認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역시 需要因子에 의하여 인플레이션을 說明하고 있지만 이같은 價格과 賃金의 伸縮性을 否認하고 있는 것이 이론바 需要移動理論(demand-shift inflation theory)이다. 즉 이 理論은 먼저 資本財價格이 需要增加와 費用上昇의 結果로 上昇하기는 하지만 需要減少와 費用下落에 응하여 下落하지는 않으며 賃金도 마찬가지로 生計費나 企業利潤의 增加에 따라 上昇하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 下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一方的인 伸縮性의 結果는 需要의 移動이 인플레이션의 效果를 가진다는 것, 즉 需要가 移入한 部分에서는 價格과 賃金을 上昇시키지만 需要가 移出한 部門의 價格과 賃金은 전혀 變化되지 않고 従來의 水準이 維持된다는 것이다.

價格水準의 陞와 같은 上方偏向은 “部分(sectoral)인플레이션” 혹은 “需要移動(demand-shift)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운다.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形態의 “混合된(mixed)” 인플레이션理論이며 그 完全한 發展은 C. Schultz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¹⁹⁾

(18) M. Bronfenbrenner and F.D. Holzman, *op. cit.*, pp. 59—61.

(19) Charles Schultze, *Recent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이러한 部分分析은 그 有用性을 完全히 確信시키지는 못하였다. “部門간 移動”的 比率이一定하다고 하면 下落하는 部門에 있어서의 超過供給과 失業의 可能한 發生은 價格上昇을 終結시키고 아마도 그것을 逆轉시킬 것이다. 一聯의 部門간 需要移動의 結果는 결국 이동하는 수요의 速度가 증가할 때에는 상향적인 價格水準의 壓力으로 될 것이고 이 速度가 減少하고 있을 때에는 下向의 價格水準壓力이 될 것이다. 만약 價格水準壓力이 實제로 계속적으로 上向의 需要移動以外의 어떤 다른 要因이 作用하고 있다는 것이 批判家들의 見解이다. ⁽²⁰⁾

인플레이션의 原因에 관한 理論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需要側面에서 發展되어 왔으나, 最近에 이르러 특히 1950 年代後半期의 美國의 인플레이션을 說明하면서 供給側面을 重要視하는 費用인플레이션論이 發展되고 있다.

費用인플레이션論은 애초에 M.W. Reder에 의하여 所得 인플레이션(income inflation)으로서 一般化되었으며, 그 뒤 H. Aujac, J. Dusenberry, F.D. Holzman 등이 이 理論을 發展시켰고, G. Ackley의 管理價格인플레이션 혹은 마크업인플레이션은 이러한 初期모델의 한 適用인 것이다. ⁽²¹⁾

需要인플레이션과 對立되는 見地에서 展開된 所得인플레이션의 基本的인 着想은 完全雇傭狀態에 있어서 相異한 所得集團이 그들의 貨幣所得을 引上함으로써 그들의 實質所得을 提高하거나 維持할 것을 企圖하는 테에서 인플레이션이 發端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相異한 所得集團의 企圖에 相應할만큼 生產水準이 擴張될 수 없다면 價格上昇이 일어나고 모든 集團이 그들의 目的을 追求함에 있어서 약간의 挫折을 當하게 된다. 換言하면 所得目的으로 表示된 實質需要가 그것을 滿足시키기 위하여 獲得될 수 있는 實質供給을 超過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過程은 그들의 所得目的을 약간씩 挫折당하게 되는 所得集團이 그들의 經濟的 目的을 貫徹시키기 위하여 貨幣的 秩序를 變化시키려고 하는 限 계속되는 것이다. 이 過程이 中止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新しい 貨幣的 秩序에 適應할 때인데, 이러한 適應은 자기들의 所得을 變化시킬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예컨대 金利生活者들)이 다른 所得集團의 要求를 滿足시키기 위하여 上昇하는 價格에 의하여 충분히 摧取 당하였을 때, 또는 一般的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過程이 雇傭 또는 實質支出의 충분한 減少를 일으켜 超過的인 所得要求를 形成하는 勢力이 中斷되었을 때 發生한다. 여기서 말하는

(20) M. Bronfenbrenner and F.D. Holzman, *op. cit.* p. 63.

(21) *Ibid.*, p. 73.

集團은 반드시 歷史的으로나 機能的으로 規定되는 것이 아니고 利害關係를 共同으로 가진 個人들의 어떠한 集團——비단 賃金勞動者, 利潤受取者 및 金利生活者 뿐만 아니라 政府, 農民, 輸出業者, 輸入業者 혹은 個別組合 등을 包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展開된 所得인플레이션論은 인플레이션의 根本的原因을 從來와 같이 需要의 側面에서 구하지 않고 供給의 側面으로 그 視角을 돌린 것이다. 供給側面에 價格上昇의 根本原因이 있음을 指摘한 이같은 理論이 인플레이션의 原因을 供給側面에서 보다 具體的으로 追求하는 方向으로 展開된 것이 이른바 코스트풋쉬(cost-push) 인플레이션論인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코스트풋쉬論이 實事上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²²⁾ 1950年代後半期에 있어서 이 理論이 復活하게 된 直接的인 製機는 W.Thorp 와 R.Quandt 가 이른바 “뉴인플레이션”(new inflation)을 提唱한 데에 있다.⁽²³⁾ 이는 超過需要(demand-pull)에 의하여 인플레이션을 說明하던 從來의 正統的 理論에 대한 反論이지만 그것은 특히 生產과 雇傭의 減少가 回避되려면 費用上昇(cost-push)이 貨幣供給, 貨幣所得 및 貨幣支出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결코 否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뉴인플레이션論이 보다 重要視하는 것은 失業問題에 대한 大衆의 關心의 增大와 함께 經濟的 壓力團體(勞動組合을 비롯한)의 勢力強化가 政策當局에 組織的인 壓力を 加함으로써 擴張的인 財政金融政策에 의하여 不均衡의 價格과 賃金上昇의 可能性을 增加시켰다는 點이다. 이 見解는 極端的인 恐慌의 경우를 除外하면 價格과 賃金의 “均衡的인” 引下의 可能性이 크게 減少되었다는 點을 또한 重要視하고 있다. 이러한 兩面의 變化的 複合의 effect는 그 進展率이 極端의이지 않고 단조로운 인플레이션의 進行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招來하는 코스트풋쉬는 賃金과 利潤의 兩側面에서 論及되고 있다. 먼저 理論家들이 提示하고 있는 賃金풋쉬가 可能한 條件부터 살펴보자. 그것은 勞動의 需給條件에 대한 考察에 의하여 可能한 것이다.

먼저 勞動에 대한 需要의 側面에서 볼 때 賃金풋쉬의 可能性은 勞動에 대한 需要의 彈力

(22) “코스트인플레이션에 대한 分析의 進步는 1930年代에 Keynes의 ‘貨幣論’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Keynes는 ‘自發的인’所得의 增加와 ‘誘發的인’增加量 隨分하였는데 前者가 供給인플레이션 혹은 費用인플레이션을 代辦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洞察은 ‘一般理論’에 까지 擴張되지 않았고 ‘戰費調達論’에서도 取扱이지 않았다. Keynes理論의 追從者들은 ‘一般理論’의 權威 때문에 코스트인플레이션의 存在조차 疑問視하는 것 같다.” [M. Bronfenbrenner and F.D. Holzman, *op. cit.*, p. 64.]

(23) Willard Thorp and Richard Quandt, *The New Inflation*.

(24) M. Brofenbrenner and F.D. Holzman, *op. cit.*, p. 65.

性에 의존하는데, 労動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을 좌우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이다. ⁽²⁴⁾

- ① 最終生產物에 있어서 労動要素의 必須度, ② 最終生產物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
- ③ 總費用에 대한 賃金의 比率, ④ 結合要素의 供給彈力性.

따라서 個別的인 労動者나 小集團의 労動者는 그들의 労動用役이 最終生產物에 있어서 必須의이고 代替不可能하면 그들의 賃金을 上昇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는 대부분 總費用에서 賃金이 占하는 比率이 낮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必須性 내지 代替不可能性은 労動者全體에게 適用될 수는 없고 少數의 労動者에게만 適用되므로 이같은 條件에 의하여 賃金收支에 의한 코스트收支인플레이션이 發生할 可能性은 거의 全無하다. 이러한 必須性의 缺如를 克服하고 그 代替彈力性을 減少시키기 위하여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組合으로 組織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組織化에 의하여 労動의 代替彈力性이 效果的으로 減少되었다고 할지라도 最終生產物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이 큰 企業에 있어서는 그 企業이 特別히 有利한 위치에 있지 않는限 賃金引上은 不可能하게 된다. 競爭的인 條件下에서는 어떤 個別企業에 있어서만의 賃金增加는 즉각 그 企業의 利潤을 減少시키거나 除去할 것이며, 結果적으로 그 企業으로 하여금 操業을 中斷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競爭的產業에 있어서는 多數의 労動者와 多數의 雇傭者간에 團體的인 協約을 行함으로써 비로소 賃金收支가 可能하게 된다. 労動組合과 雇傭者組織이 각各 多數로 存在한다고 해서 賃金收支가 競爭的인 產業에 있어서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모든 組合이 一致하여 行動하거나 많은 雇傭者와 동시에 協約을 행한다면 當該 企業은 총체적으로 보아 非彈力의인 需要曲線을 가지게 되므로 賃金은 능히 收支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直接的으로 말한다면, 個別의인 企業이 하나의 集團으로서 協約하게 되면 그 企業이 賃金引上을 容認하기 위하여 價格을 引上함으로써 반드시 競爭者들에게 販賣量을 빼앗길 것을 念慮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說明은 A. M. Cartter와 L. Ulman이 指摘했듯이 “兩面의 날을 가진 칼(a two-edged sword)”이라고 할 수 있다. ⁽²⁵⁾ 즉 雇傭主들은 團體協約의 경우 販賣量의 流失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賃金引上에 抵抗하고 龍業을 받아들일 誘因이 더욱 強化되고 그러므로 多數雇傭者와의 協約에 있어서는 賃金引上의

(25) *Ibid.*, p. 66.

(26) 이 問題는 景氣狀態나 失業의 水準 혹은 그 水準의 變化에 대한 期待 등을 追加的인 變數로서 導入함으로써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相對的으로 買氣가 있는 景氣狀態下에서는 企業들이 커다란 賃金增加를 容認하기를 떨 꺼리고 龍業에 들어가기를 願하지 않는다. 短期의 需要曲線은 보다 非彈力의이고 上向移動할 것으로 期待될 것이며 失業水準이 높을 때보다 利潤이 더 높고 操

可能性이 個別雇傭者와의 協約에 있어서보다 더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勞動에 대한 需要의 側面에서 볼 때 賃金 풋쉬가 可能하기 위하여는 組織化된 労動者가 多數의 雇傭者와 團體的인 協約을 行할 때이며 이 경우에도 景氣狀態나 失業水準과 같은 需要率의 側面이 전혀 無關係한 것은 아님을 알수 있다. 이제 勞動의 供給側面에서 賃金 풋쉬가 可能한 條件을 살펴보자.

먼저 賃金引上을 主目的으로 하는 勞動組合의 賃金要求를 위한 指針이 되는 것은 生計費指數의 變化와 企業의 經濟的 狀態, 그리고 隣接產業(혹은 企業)의 賃金率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賃金 풋쉬를 可能케 하는 指針은 第 3의 指針 즉 隣接產業(혹은 企業)의 賃金率이다.⁽²⁷⁾ 다시 말하면 隣接產業(혹은 企業)과의 賃金隔差의 存在와 그것을 除去하려는 企圖의 存在는 賃金 풋쉬의 波及에 基本的인 要因이 되는 것이다.

賃金 풋쉬가 賃金隔差로부터 發生하는 예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經營者가 高賃金에 의하여 一定한 職業分野內에 있어서 높은 生產性의 労動者를 雇傭한다든가, 어떤 產業에 있어서 生產性이 높은 企業이 커다란 賃金引上을 許容한다든가, 高利潤의 寡占企業이 賃金增加를 容認한다든가, 또는 어떤 企業이나 產業의 生產物에 대한 需要是增加하는데 反하여 다른 企業이나 產業의 生產物에 대한 需要是 下落함으로써 前者에 있어서만 價格과 賃金의 誘發된增加가 생긴다든가 하는 등의 方式으로 賃金隔差가 생겨난다. 이러한 賃金隔差의 除去는 勞動組合의 目標가 된다. 組合이 이러한 隔差를 除去하고 또한 그렇게 함에 있어서 限界生產性이나 勞動需要에 의하여 競爭的으로 正當화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賃金의 increase를 達成하는데 成功하는 정도만큼 價格은 풋쉬 업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不公平한” 隔差를 克服하려는 企圖는 組合에 의한 “非現實的인” 要求를 誘發하고 여기서 賃金은 實제로 需要의 狀態를 考慮하지 않고 管理되는 것이다.

이같이 賃金隔差의 存在가 賃金 풋쉬를 일으키는 過程은 흔히 勞動의 非移動性(immobility)과 連結되고 있다. 一定한 정도의 勞動의 移動性이 存在한다면 一企業(產業)에 있어서 賃金의 上昇은 勞動을 다른 企業(產業)으로부터 誘因할 것이다. 여기서 結果되는 競爭

業中斷의 犠牲이 크게 된다. 이 경우에는 多數雇傭者와의 協約은 賃金增加에 대한 最後의 制約을 除去하는 方法이 될 것이다. 反面에 景氣가 좋지 않고 下落하고 있을 때에는 企業은 관대한 賃金增加를 그렇게 쉽사리 容認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龍業에 直面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의 多數雇傭者協約은 賃金引上에 대한 企業側의 抵抗을 오히려 強化하는 作用을 할 것이다. [Ibid., pp. 66—67.]

(27) 生計費指數의增加는 오히려 最終生產物에 대한, 그려므로 勞動에 대한 貨幣需要의增加에反映될 것이며, 企業의 經濟的 狀態, 즉 生產性과 利潤의 變化에 관련된 賃金의增加는 하나의 풋쉬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平均以上의 賃金增加를吸收할 可能성이 있을 때에는 價格上昇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의인 勢力은 賃金을 以前의 水準보다 아마 약간 더 높은 比率로, 그러나 非移動性의 경우 만큼은 높지 않은 比率로 平準化시키는 傾向이 있을 것이다. 賃金隔差의 存在와 勞動의 非移動性의 結合은 “競爭的인 경우보다 더 큰” 賃金 풋쉬를 結果한다. 勞動組合은 各種의 規例에 의하여 勞動의 非移動性에 本質的인 寄與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勞動의 供給側面에서 賃金 풋쉬를 可能케 하는 것은 賃金隔差의 存在 및 그것을 除去하려는 努力의 存在, 그리고 그것과 勞動의 非移動性과의 結合인 것이다.

코스트 풋쉬는 勞動組合이 發揮하는 壓力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企業獨占과 寡占에 의하여 發生하는 費用上昇으로부터도 發生한다는 點이 흔히 論及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보통 “마크업”(mark-up), 혹은 管理價格(administered-price) 인플레이션理論으로 表現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企業獨占”과 “勞動獨占”이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에 미치는 영향은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다. 이러한 差異를 G. Haberler는 財貨市場에 있어서 企業獨占이 存在하고 勞動市場에 있어서는 競爭이 成立하는 경우와 財貨市場에 있어서 競争이 普遍的이고 勞動市場에 있어서 獨占이 存在하는 경우를 比較함으로써 說明하고 있다.⁽²⁸⁾

먼저 企業獨占이나 寡占이 存在하지 않고 이들이 엄격하게 統制되고 있으며 勞動市場은 강력한 勞動組合으로 組織化되어 있는 경우에는, 賃金 풋쉬에 의한 코스트인플레이션이 發生한다는 것이 前述한 바와 같이 明白하다. 물론 하나의組合이 特定한 企業을 對象으로 罷業 등에 의하여 賃金上昇이 實現되도록 하는 것은 競爭的인 產業에 있어서는 어느 한 企業이 비록 短期的으로라도 훨씬 높은 賃金을 支拂하거나 그 生產物에 대하여 다른 企業보다 더 높은 價格을 賦課할 수 없기 때문에 不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美國 및 餘他國家의 競爭的인 產業에 있어서의 勞動組合이 實證하고 있는 바와 같이 生產物市場에 있어서의 競争이 全產業을 해칠 수 있는 巨大한 交滲力과 影響力を 가진 強力한 勞動組合의 形成에 克服할 수 없는 障碍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G. Haberler는 勞動市場에는 競争이 成立되고 있으나 生產物市場에는 수많은 企業獨占 내지 寡占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獨占價格으로부터 結果되는 價格 및 費用水準에 대한 壓力이 계속적으로 作用하고 그리하여 가격을 계속적으로 上昇하게끔 내버려두거나 (인플레이션), 혹은 成長과 雇傭水準의 沮害를 무릅쓰고 財政金融政策에 의하여 需要의 擴張과 價格의 上昇을 抑制하여야 할 事態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

(28) Gottfried Haberler, “Internal Factors Causing and Propagating Inflation”, *Inflation*, ed. by D.C. Hague, pp. 27—31.

물론 G. Haberler 도 企業獨占이 競爭의 경우보다 價格을 더 높은 水準으로 維持하는 것을 認定하지만 그러한 獨占價格이 계속적인 풋쉬업을 示顯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從前에 競爭이 存在하던 市場에 獨占이 「導入」되면 그것은 價格上昇을 招來할 것이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의지만 獨占의 「存在」가 價格에 대한 계속적인 壓力を 形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G. Haberler 를 비롯하여 많은 歐美學者들이 勞動獨占에 비하여 企占獨占을 보다 非인플레이션의라고 認定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推論에 依據하고 있다. ⁽²⁹⁾

첫째 企業의 利潤은 비단 價格水準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고 販賣量과 單位費用에도 크게 依存한다는 點, 둘째로 利潤增大를 위한 企業간의 경쟁이 있는限 그 競爭은 生產性增加와 販賣量增大에도 集中된다는 點, 그리고 세째로 高利潤으로부터의 支出效果는 高賃金으로부터의 그것만큼 크지는 않다는 點 등이 그것이다.

확실히 近代의 西歐世界에 있어서는 企業獨占이 勞動獨占보다 훨씬 微弱한 것이 事實이다. “企業獨占은 분명히 많은 勞動獨占이 獲得한 物理的인 集結力과 嚴格한 規制力を 缺如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國家, 특히 美國에 있어서 勞動組合이 法律上으로나 實際的으로 免除되고 있는 特別한 統制를 받고 있는 것이다.”⁽³⁰⁾ 따라서 歐美를 中心으로 發展된 費用인플레이션理論이 利潤 풋쉬의 可能性을 多少 貶下하고 있는 것은 當然한 일이며 이러한 理論을 後進國에 適用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이다.

以上에서 概觀한 超過需要論과 費用上昇論과는 立場을 약간 달리하여 兩者的 綜合을 試圖한 模型이 있다. 그것은 G. Ackley 의 「마크업 인플레이션 모델」이다.

G. Ackley 는 그의 「마크업 인플레이션 모델」에서 모든 企業은 그들의 價格을 原料 및 勞動費用을 上廻하는 약간의 마크업에 基礎하고 勞動者側은 또한 生計費 上昇을 上廻하는 마크업을 包含하고 있는 貨幣賃金의 上昇을 追求한다고 假定하고 있다. 이러한 企業 및 勞動의 兩側에서의 마크업 追求가 價格과의 齒車運動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說明이다. 그는 나아가서 이러한 過程이 企業간의 去來에서 많이 發生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各 企業은 그 企業이 他企業으로부터 購入하는 中間生產物의 價格에 마크업이 包含되고 있기 때문에 最終生產物의 價格을 마크업하도록 誘引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Ackley 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종전의 所得인플레이션모델을 發

(29) M. Bronfenbrenner and F.D. Holzman, *op. cit.*, pp. 72—3.

(30) G. Haberler, *op. cit.*, p. 30.

展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모델은 첫째 價格設定過程을 實際의 企業行爲에 관연시키고 있다는 點, 둘째로 短期的으로는 管理價格과 賃金이 需要에 대하여 敏感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點 등이 그것이다. 短期的으로는 인플레이션이 超過需要에 의하여 始發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需要不足에 의하여 中止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長期的으로는 事情이 달라진다고 한다. 結果的으로 超過需要은 마크업의 比率를 높이고 그리하여 費用의 變化없이 인플레이션을 始發하거나 加速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農產物, 혹은 餘他의 原材料의 市場에는 항상 部分的으로 競爭이 存在하므로 超過需要는 이러한 投入物의 價格上昇을 통하여 마크업인플레이션을 誘發한다. 이와 같이 G. Ackley 는 결국 “收支一括 모델”(push-pull model)을 設定하고 있는 것이다. 즉 費用의 마크업에 의한 價格 및 賃金設定의 說明은 “收支”的 메카니즘을 說明하는 것이고, 景氣狀態의 變化에 따른 마크업의 크기의 變化는 “收支”的 메카니즘을 反映하는 것이다.⁽³¹⁾

III. 通貨論者와 構造論者

1950 年代의 後半期를 中心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本質에 관하여 이른바 “通貨論者”(monetarist)와 “構造論者”(structuralist)간에 理論的 政策的 論爭이 展開되었다. 이 論爭은 前節에서 考察한 바와 같은 美國에 있어서의 “demand-pull 論對 cost-push 論”的 論議에서 派生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인플레이션問題에 관한 이같은 理論的 政策的 對立의 背景은 1930 年代 後半期 以來 「라틴아메리카」를 괴롭혀 온 瘴疾的인 인플레이션인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즉 「라틴아메리카」諸國은 대체로 1920 年代를 통하여 상대적인 價格安定期를 示顯하였고, 1930 年代初期에는 價格下落期를 記錄하였으나, 1930 年代의 後半期에 접어든 以來 인플레이션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하나의 斷續的인 現象이 되어 왔다. 「베네제라」와 「카스트로」以前의 「キュバ」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단지 경미한 美國의 그것과 같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멕시코」「코롬비아」및 「페루」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1950 年代에 弱化되었다고는 하나 美國의 그것을 족히 凌駕하는 정도이었고, 「알젠티나」「브라질」「칠레」「우루과이」등과 같은 다른 「라틴아메리카」諸國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31) M. Bronfenbrenner and F.D. Holzman, *op. cit.*, p. 75.

(32) Joseph Grunwald, “The ‘Structuralist’ School on Price Stabi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hilean Case,” *Latin American Issues*, ed. by A.O. Hirschman, p. 95.

이 韓國戰爭 以後에 惡化되었었다. 韓國戰爭의 終息은 또한 第2次世界大戰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經濟的 上昇을 漸次的으로 弱化시키는 轉機가 되었다. 즉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諸國에 있어서 經濟成長率은 下落하는 方向으로 轉換되었고, 輸出價格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58年까지에는 1人當所得의 實質的인 停滯現象이 發生하였던 것이다.⁽³³⁾

이러한 經濟的 狀況속에서 「칠레」「알젠틴」「코롬비아」「페루」등의 諸國家는 國際通貨基金(IMF)과 美國政府로부터의 刺戟에 의하여 보다 緊縮的인 信用制限과 公共支出의 削減, 部分的인 貨金減縮, 平價切下, 그리고 各種 補助金과 直接統制의 撤廢등을 内容으로 하는 反인플레이션計劃을 制定하였다.

通貨論者와 構造論者간의 論爭의 焦點은 IMF가 支持하는 이같은 反인플레이션計劃에 대한 賛否에 있었다. 즉 이른바 通貨論者의 見解는 대체로 IMF에 归屬되는 諸見解에 密接한 것들이고 構造論者의 그것은 IMF의 劝告를 反對하고 오히려 「라틴아메리카」經濟委員會(ECLA)의 見解에 의하여 支持되는 것들이다.⁽³⁴⁾

Roberto de Oliveira Campos에 따라 通貨論者와 構造論者들의 對立的인 見解를 要約하여 보면 먼저 通貨論者들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³⁵⁾

(a) 인플레이션은 經濟開發을 促進하는 役割을 그쳤고 事實上 經濟開發과 兩立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즉 인플레이션과 經濟開發을 함께 가지게 된 國家일지라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加速化와 經濟開發의 減速化에 直面하고 있다.

(b) 인플레이션은 그것이 爆發的인 繁張으로 變質하기 전에 迅速히 中止되어야 하며 唯一한 効果的方法은 國際資本援助에 의하여 補足되는 財政金融政策의 優重한 運用에 의하여 超過需要를 抑制하는 것이다.

(c) 이른바 供給의 非彈力性이나 隘路의 대부분은 自生的이거나 構造的인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過程自體가 進行되는 동안에 생겨난 價格 및 換率의 歪曲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상과 같은 通貨論者の 見解에 反하여 構造論者は 다음과 같은 主張을 펴고 있다.⁽³⁶⁾

(33) David Felix, "An Alternative View of the 'Monetarist'—'Structuralist' Controversy," *op. cit.* ed. by A.O. Hirschman p. 81.

(34) 물론 通貨論者が IMF와 見解를 달리하는 點이 많이 있으며, ECLA의 公式的인 報告書가 構造論者の 見解에서 보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過程에 관하여 宿命的인 見解를 表明하지도 않고 財政金融政策에 대한 懐疑도 構造論者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다. [Roberto de Oliveira Campos, "Two Views on Inflation in Latin America," *op. cit.* ed. by A. O. Hirschman p. 69.]

(35) *Ibid.*, p. 69—70.

(36) *Ibid.*, p. 70.

- (a) 인플레이션은 經濟成長의 當然한 附隨現象이다.
- (b) 供給의 硬直性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成長의 停滯와 失業을 誘發함이 없이 財政金融政策에 의하여 抑制될 수는 없다.
- (c) 輸出收入의 不安定性은 成長過程에 固有한 供給의 非彈力性뿐만 아니라 輸入能力의 隘路를 發生시킴으로써 短期的으로 인플레이션을 抑制하는 것을 不可能케 한다. 즉 外國援助가 輸入品의 供給을 보다 彈力의에게 할 수 있는 정도를 除外하고는 輸出收入의 不安定性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漸進의 攻擊이 必要하다.

이상에서 究知할 수 있는 바와 같이 論爭의 根底에 깔려 있는 政策問題는 貨幣的 安定政策이 經濟成長과 兩立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다. 構造論者の 要旨는 價格安定이 經濟成長을 通해서만 達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基本要因은 本質的으로 構造的인 것이라고 한다. 貨幣的 要因도 重要하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波及시키는 勢力으로서 重要한 것이지 그것을 發生시키는 要因으로서 重要한 것은 아니다. 貨幣政策이 容易하게 運用될 수 있는 迅速한 效果를 가지는 것이 事實이지만 그것은 다만 인플레이션의 症勢(symptoms)만을 處理할 뿐이지 인플레이션 그 自體를 治癒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³⁷⁾

이에 反하여 通貨論者들은 構造論者들이 強調하는 인플레이션의 構造的인 原因, 즉 供給의 非彈力性이나 硬直性 혹은 隘路 등은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에서 생겨난 것인지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發生시키는 要因이지는 않다고 主張한다. 즉 貨幣的 要因은 인플레이션의 殘滓現象이 아니고 그의 核心的인 要因이며 따라서 古典的인 財政金融政策이 인플레이션의 治癒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重要하다는 것이다.⁽³⁸⁾

여기서는 주로 「칠레」의 인플레이션을 說明하기 위하여 發展된 構造論者들의 理論을 概觀하고 이러한 構造論者들의 理論에 대한 通貨論者들의 批判과 通貨論者에 대한 構造論者들의 批判을 각各 考察하기로 한다.

構造論者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의 根底에 깔려 있는 基本的 내지 構造的 要因은 本質的으로 供給의 非彈力性和 公共金融機構의 硬直性에 連結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의 構造的 要因은 經濟의 低開發狀態에 밀접하게 關聯되어 있다는 것이다.⁽³⁹⁾

供給의 非彈力性이라 함은 대체로 財貨와 用役의 供給이 深刻한 價格壓力없이 增加하는 需要에 對應하여 擴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供給의 構成이 需要構造의 變化에 대하여도

(37) Joseph Grunwald, *op. cit.*, p. 69.

(38) Roberto de Oliveira Campos, *op.cit.*, p. 73.

(39) Joseph Grunwald, *op. cit.*, p. 109—110.

充分히 適應하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非彈力性 内지 硬直性이 특히 顯著한 것은 經濟의 下部構造(infrastructure)이며, 下部構造의 硬直性은 生產, 특히 農業生產의 伸縮性的 缺如를 誘發한다는 것이다. 또한 農業生產의 硬直性과 아울러 輸入能力의 非彈力性 또는 輸入能力의 激甚한 短期的 變動도 供給硬直性의 重要한 하나의 要因으로 提示되고 있다. 그리고 構造論者들은 國內市場의 零細性으로 말미암아 造成된 產業 및 分配組織의 獨占的 發展, 특히 個人所得分配의 高度한 不平等性도 또한 供給硬直性의 齊來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供給硬直性을 齊來하는 要因밖에도 다른範疇의 構造的인 要因으로는 政府支出의 硬直性에 비한 政府收入의 不安定性이 提示되고 있다. 즉 國民所得의 相當部分을 한 生產物의 輸出에 依存하고 있는 國家에 있어서는 政府財政이 그 生產物의 價格變化에 심한 影響을 받는 反面에 經常支出은 상대적으로 硬直的인 傾向이 있으므로 輸出商品의 價格下落에 對處하는 方法은 公共投資를 줄이거나 赤字財政에 呼訴하거나 해야 할 것이다. 前者の 경우에는 經濟開發에 有害한 影響을 미치며 後者の 경우에는 인플레이션壓力을 創出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制度의in 障碍는 公共收入의 擴張을 어렵게 한다. 租稅徵收에는 缺陷이 있고 政府는 行政上의 容易性 때문에 間接課稅에 크게 依存하며 이는 租稅構造의 累進性을 減少시킴으로써 所得分配의 不平等을 더욱 惡化할 뿐만 아니라 또한 租稅收入의 增加가 必要할 때 間接稅爲主의 課稅構造에 依存하는 것은 價格水準을 上昇시키는 直接的인 效果를 가지므로 間接稅中心의 課稅構造는 인플레이션의in 것이다.

이와 같이 構造論者들이 인플레이션의 構造的인 要因으로 提示하는 것은 產業生產, 특히 農業生產의 硬直性과 輸入能力의 制約, 그리고 所得分配의 不平等 등에서 齊來되는 供給의 非彈力性과 政府財政의 硬直性이다. 이같은 構造的인 要因밖에도 다음과 같은 非構造的인 要因이 또한 인플레이션의 進行에 重要한 役割을 한다는 것을 構造論者들은 認定하고 있다.

그 하나는 外生的인 輸入價格의 上昇, 政治的蜂起, 天災地變 그리고 非合理的인 政府干渉 등을 總括하는 이른바 “與伴的”(circumstantial) 要因이며, 다른 하나는 信用機構, 自動的인 生計費賃金調整 그리고 政府의 赤字支出 등과 같은 “波及”(propagation)要因이다. 正統的인 貨幣政策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波及要因에 對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構造論者들의 主張이다. 그러나 이러한 波及要因에 대한 對處는 經濟의 各 部門에 있어서 經濟活動水準을 最低의 共通水準에 까지 低下시킴으로써 經濟成長에 有害한 種類의

安定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⁴⁰⁾

이제 構造論者의 理論에 대한 通貨論者들의 批判을 살펴보자.⁽⁴¹⁾

通貨論者들은 먼저 構造論者들이 인플레이션 問題에 관하여 先進國과 後進國간의 差異를 너무 誇張하고 後進國相互간의 差異를 無視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예컨대 後進國간에 있어서도 「브라질」은 擴張的인 貨幣政策을 實施하여 深刻한 인플레이션에 直面하였지만 「멕시코」는 보다 慎重한 財政金融政策을 追求하여 輕微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따름이다. 先進國集團내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最近의 安定化計劃을 導入하기 전까지도 인플레이션의 貨幣政策을 追求하였음에 反하여 獨逸은 保守의 接近에 固着해 왔었다. 따라서 通貨論者들의 見解는 인플레이션問題에 관한 限「브라질」과 「멕시코」간에 있어서보다 「브라질」과 「프랑스」간에 보다 類似性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通貨論者들은 構造論者들의 主張에 있어서 核心을 이루고 있는 供給의 硬直性 혹은 隘路, 輸入能力制約 그리고 財政金融政策의 受動性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構造論者들의 思考는 주로 「칠레」의 인플레이션이 가지는 特殊性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事實인데, 거의 95年동안 인플레이션을 經驗해온 「칠레」는 그것을 克服하려는 努力이 最近에는 開放인플레이션(open inflation)을 抑壓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으로 轉換시켰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에서 價格과 換率의 歪曲은 特定한 部門(食糧生產, 輸送, 電力, 輸出 등)에의 投資를 沮喪시키고 經濟活動全般에 걸쳐 隘路를 發生시켰으며, 이러한 隘路가 일단 發生하면 그것은 하나의 獨立된 原因의인 役割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克服을 한층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通貨論者의 說明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元來의 變數(variables)가 問題의 與件(datum)으로 轉換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事實이 自生的인(natural) 隘路와 誘發된(induced) 隘路를 區別하는 妥當性을 減少시키지는 않는다”⁽⁴²⁾는 것이다.

通貨論者들은 隘路發生의 模型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 (1) 海外部門의 壓力으로부터 發生하는 超過需要가 價格인플레이션에로 이른다.
- (2) 一般的 超過需要를 抑制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抑制하려 하지 않고 特定의 主要價格을 統制하려 한다.

(40) *Ibid.*, p. 116.

(41) Campos, *op. cit.*, pp. 70—9.

(42) *Ibid.*, pp. 73—4.

- (3) 政府의 赤字財政이 白發的인 民間貯蓄 및 投資를 沮喪시키고 그를 代替하였다.
- (4) 인플레이션이 惡化되고 隘路가 發生하였으며 “構造的인 硬直性”이 創出되었다.
- 通貨論者들은 隘路發生의 模型을 위와 같이 提示하면서 具體的인 隘路의 發生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 (a) 輸送과 電力上의 隘路는 費用이 上昇함에도 不拘하고 料率을 固定시킴으로써 投資가 中斷되고 負의 純投資가 일어났으며 여기서 隘路가 發生한 것이다.
- (b) 食糧供給의 隘路는 政府의 政策이 一般的인 超過需要를 抑制하려 하지 않고 그보다는 容易하게 基礎的인 食糧物資의 價格統制를 實施하였기 때문에 消費需要를 助成한 結果가 되고 農業投資의 相對的 利潤性을 減少시켰으며 土地를 生產的 利用으로부터 非生產的인 利用으로 轉換시킴으로써 發生하였다.
- (c) 貯蓄函數의 硬直性은 投資家를 위해 利子率을 低水準으로 凍結시킴으로써 實質的인 負의 法定利子率을 齊來하였고 이것이 貯蓄을 不動產 外換 其他 非正常的인 金融去來에로 投入케 함으로써 發生한 것이다.
- (d) 輸入能力上의 隘路는 基礎的인 輸入品에 대한 優待的 換率이 浪費的인 消費를 增加시키고 輸入代替를 歪曲化시켰으며 企業家에게 私的 費用을 人爲的으로 減少시켜 投資需要를 過熱시킴으로써 發生하였다. 또한 優待的인 輸入換率은 特定輸出品에 대한 固定換率과 並行됨으로써 輸出에 대하여 過重한 課稅가 行하여지는 結果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多數의 「라틴아메리카」諸國은 複數換率制度를 誤用하여 金卵을 낳는 犬을 잡는 事態”에 매우 가깝게 이르른 것이다.⁽⁴³⁾ 通貨論者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諸國의 實質的인 인플레이션壓力의 不可抗力性의 대부분을 說明하는 “根源的”이고 거의 不可避한 隘路로서 輸入能力의 制約을 強調하는 構造論者들에게는 “이러한 隘路가 인플레이션의 政策과 反輸出傾向의 開發計劃의 結果로서 正常的으로 期待되는 こと以上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證明할 責任”⁽⁴⁴⁾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通貨論者들은 構造論者들이 財政金融政策의 概念을 지나치게 狹意로 解釋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通貨論者의 主張은 公共支出 投資規模 輸出規模 등으로부터 發生하는 壓力이 一定할 때 貨幣政策當局은 반드시 受動的으로 措置할 必要가 없으며 여러가지 方法으로 反作用할 수 있는데, 이러한 反作用의 結果가 반드시 實質投資水準의 下落하거나 失業일 수는 없다는

(43) *Ibid.*, p. 76.

(44) *Ibid.*, p. 78.

것이다. 즉 企業가 政府의 政策을 固定的인 것으로 看做하고 逆轉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그는 雇傭이나 投資의 減縮을 選擇할 必要가 없으며 오히려 그의 實物資產을 貨幣化하거나 個人消費를 減少시킬 것이다.

물론 貨幣政策當局의 費用上昇壓力은 實質投資의 減少나 失業없이 抵抗될 수 없다는 假定에서 出發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貨幣的 處方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은 通貨論者들도 是認하지만, 그렇다면 “實物的” “構造的” “制度的” 處方도 또한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 즉 構造論者들은 供給의 非彈力性과 輸入能力의 制約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그 當然한 論理的 歸結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可能한 唯一의 效果的 對策은 超過需要의 減縮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點은 바로 通貨論者가 항상 詩호하고 있는 主張인 것이다.

通貨論者들의 主張에 의하면 財政金融政策의 有用性은 單純히 超過需要를 惡化할 追加的인 投資를 行하지 않고도 隘路를 矯正하기 위하여 많은 政策의 效果를 發揮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價格誘因을 矯正하고 非生產的인 部門으로부터 隘路部門으로 政府投資의 方向을 바꿈으로써 財政金融政策은 隘路의 除去에 有用한 效果를 發揮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通貨論者들은 構造論者들이 혼히들 想定하는 것처럼 安定化計劃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全般的인 投資水準을 減縮하는 것이 成長에 有害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一時의 인 것에 지나지 않고 投資上昇에 의하여 즉시로 逆轉되며 投資構成이 改善됨으로써 보다 낮은 投資規模가 實質成長의 加速화와 兩立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構造論者에 대한 通貨論者의 批判을 考察하였거니와 이제 通貨論者에 대한 構造論者의 批判을 살펴보자. ⁽⁴⁵⁾

通貨論者에 대한 構造論者의 批判은 세 가지 側面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것을 除去함에 있어서 信用緊縮, 財政減縮, 直接統制 등 諸政策의 有用性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密接히 관련하여 經濟開發政策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의 것은 安定化計劃에 대한 不信이다.

構造論者들은 通貨論者들이 貨幣供給의 繼續적인 擴張이 없이는 인플레이션이 進行될 수 없고 그러므로 貨幣供給의 擴張을 中止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이 制止될 수 있다는 것을 強調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본다. 長期에 걸쳐 이같은 方案을 實施하는 것은 1人當產

(45) David Felix, *op. cit.*, pp. 83—93.

出水準과 頸傭이 擴張되고 있지 않는限 不可能하며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既存의 生產構造와 階級對立下에서는 그러한 安定化計劃은 다만 輸出의 계속적인 好調과 같이 外部的인 與件이 有利할 경우에만 成功할 수 있거나 아니면 社會的 不滿의 表現을 위한 排出口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獨裁에 의해서만 그같은 緊縮政策이 維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構造的인 硬直性과 社會的 緊張이 인플레이션의 原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結果이라는 通貨論者의 主張에 대한 構造論者の 反駁은 다음과 같다.

1930年代에 始發된 「라틴아메리카」의 工業化는 制限된 投資水準과 微弱한 貯蓄性向 그리고 逆進的인 租稅構造라는 매우 不利한 條件下에서 試圖되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農業生產의 遲遲한 增加는 安定的인 穀物價格을 1人當所得의 上昇 및 急速한 人口成長과 兩立할 수 없는 것으로 看들었다. 賃金 및 奉給의 要求는 穀物價格의 上昇에 매우 敏感하게 이루어지고 工業生產費는 賃金要求를 받아 들임에 따라 增大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여기에 穀物賃金價格의 螺旋現象(a food-wage-price spiral)이 發生하였다는 것이다.

痼疾的인 價格上昇은 輸入價格의 上昇에도 緣由한다. 輸入價格의 上昇은 「라틴아메리카」의 輸入需要가 「라틴아메리카」의 輸出品에 대한 海外需要를 超過하는 不均衡에서 생겨남은 물론이다. 이같은 需要關係下에서 上昇하는 輸入價格은 인플레이션壓力의 痘疾의인 原因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產業들이 「라틴아메리카」에 地盤을 둔은 후에도 國內市場의 狹小로 말미암아 相對的인 工產品價格이 그리 下落하지 못하였다. 일단 輸入代替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以上的 產業成長은 주로 所得의 成長과 그 分配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所得이 成長하지만 農業의 停滯와 都市所得의 高度한 不均等 分配는 大規模市場의 形成을 沮害하고 獨占產業 내지 寡占產業과 適正規模以上の 工場이 「라틴아메리카」의 產業構造를 浸透하였다. 더구나 低水準의 租稅收入과 競爭的인 社會的 需要是 公共投資를 沮喪하고 따라서 輸送隘路, 動力不足, 產業 및 技術教育施設의 不適切한 成長이 產業效率의 改善을 停滯시켰다. 그러나 獨占的인 市場構造는 生產費의 增加를 價格上昇으로 移轉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供給의 硬直性은 인플레이션의 結果이라는 通貨論者의 주장에 대하여 構造論者は 穀物賃金價格의 螺旋現象, 輸入價格의 上昇, 獨占的 市場構造 등을 들여

供給硬直性이 인플레이션의 原因임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構造論者들은 通貨論者の立場이 實證的인 支持를 별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 現存하는 國家로서 急速히 成長하는 非인플레이션의in 經濟는 아주 少數이라는 것이다. 「베네겔라」는 오랫동안 石油붐때문에 하나의 特殊한 경우이나 石油붐이 弛緩된 1958年以來 國內價格은 上昇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는 1953~59年간의 인플레이션의 進行率이 年間 7.5% 内外이었지만 貨幣論者の立場은 가장 잘 支持해주는 事例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는 또한 以前의 農業改革과 獨特한 社會的 政治的 團結性때문에, 均衡成長과 相對的 安定의前提로서 農業改革을 支持하는 構造論者の主張을 또한 支持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다. IMF의 處方을 따르는 國家에 있어서 外國借款의 도움에도 不拘하고 經濟成長의 현저한 復活이나 社會的in 平定도 없었던 것이다. 즉 1955年秋季以來 IMF의 處方을 實施해온 「칠레」는 1人當所得이 多少 停滯되었고 社會的 緊張이 高調되었으며, 「알젤틴」의 處方은 보다 短期的으로 進行되었으나 그 結果는 대체로 類似한 것이었다고 한다.⁽⁴⁷⁾

이상에서 우리는 通貨論者에 대한 構造論者の批判을 보았지만, 構造論者の立場은 實은 多樣하고 計劃의 作成者로서보다 그 批判者로서 行勢하기 때문에 그들의 立場을 明白히 要約하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닌 것 같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

(47) *Ibid.*, pp. 91~2.

* 인플레이션의 原因을 밝히는 것은 理論的으로 價值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政策的으로도 커다란 重要性을 가진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原因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인프레이션을 治癒하기 위한 政策手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인프레이션이 果然 超過需要 때문이라면 그것은 일 반적으로 需要減縮을 위한 財政金融政策에 의하여 統制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프레이션의 原因이 超過需要에 있는 것이 아니라 費用의 上昇 내지 供給의側面에 있는 것이라면 인프레이션의 治癒는 財政金融政策과 같은 安易한手段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通貨論者와 構造論者の論爭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低開發經濟에 있어서 인프레이션의 原因이 단순히 貨幣의in 要因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要因의 除去를 위한 財政金融政策으로 滿足할 수 있지만, 그같은 貨幣의 要因은 인프레이션의 根本的原因이 아니고 오로지 加速的인 要因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프레이션의 真正한 原因은 보다 基本的인 構造的 要因에 있는 것이라면, 인프레이션을 治癒하려는 우리의 政策的 effort은 단순히 財政金融政策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綜合的인 構造政策의 援用을 必要로 할 것이다. 인프레이션이라는 經濟的 現象은 過去 20餘年동안 한국경제를 現狀의으로 特徵지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같은 狀況속에서 인프레이션의 原因을 貨幣의 要因에 구하는 見解가 支配的이 있고 따라서 그것을 除去하려는 政策的 effort 또한 財政金融政策에 주로 의존해온 것 같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있어서 顯在的인 인프레이션 혹은 인프레이션 壓力의 根本的인 原因이 과연 貨幣의in 要因에 있는 것인가, 혹은 構造의in 要因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除去하려는 政策的 effort이 需要減縮의 財政金融政策이나 直接的인 價格統制政策에 의하여 成功的인 結果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새로운 檢討가 加해져야 할 것으로 料思된다.